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46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오세희 · 강준현 · 장철민
이광희 · 서영교 · 강경숙
박정현 · 민병덕 · 김태선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생산자 미표시, 부패·변질 등으로 거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하고 반입 농산물의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3(출하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 도매시장에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하하려는 자는 농산물의 신뢰도 확보와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출

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도매시장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경매·입찰의 우선 실시 등에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제3항에 따른 출하 제한의 기준·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의3(출하 농산물의 품질관</u> <u>리 등) ① 도매시장에 농산물</u> <u>(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u> <u>조에서 같다)을 출하하려는 자</u> <u>는 농산물의 신뢰도 확보와 유</u> <u>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출</u> <u>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u> <u>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u> <u>규격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u> <u>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u> <u>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u> <u>는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u> <u>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등</u> <u>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u> <u>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u> <u>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u> <u>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u> <u>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u> <u>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u> <u>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u> <u>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u> <u>할 수 있다.</u> <u>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급표</u>

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도매시장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경매·입찰의 우선 실시 등에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제3항에 따른 출하 제한의 기준·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